

무역상무연구
제66권
2015. 5, pp. 219-240.

논문접수일 2015. 03. 30.
심사완료일 2015. 05. 15.
게재확정일 2015. 05. 16.

Clean Report of Findings의 발급과 수출업체의 권리

이 병 략*

-
- I. 서 론
 - II. 검사기관에 의한 Clean Report of Findings의 발급
 - III. 가격검증에 대한 수출업체의 권리보호
 - IV. 정보제공 및 부당행위에 대한 수출업체의 권리보호
 - V. 결 론
-

주제어 :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IFIA), 거래가격, 정상가격

I. 서 론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종종 Clean Report of Findings(무하자 검사결과 보고서)를 접하게 되며, 특히 대금결제를 받으려 할 경우 이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하도록 요구를 받는다.¹⁾ 이 국가들이 이런 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이유는 이들이 처한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E-Mail : bllee@korea.ac.kr

1) 이들 국가로 부터 대금을 결제 받으려 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일부 서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n respect of price, quality, quantity, description of goods and H.S. code classification is to be issued by ... ’

국내 상황과 관련된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적·인적 한계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수입통관 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보관 장소, 운송체계, 컴퓨터시설 체계, 세관업무에 능숙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륙항 검사 또는 입항 후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혼잡이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즉,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자하는 개연성이 커진다. 또한 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낮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어서 통관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수입업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무역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²⁾

둘째,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환보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부 수입업자들은 송장 상에 과도한 금액을 기재하여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시도한다.³⁾ 예를 들어 수입업자

‘ ... Preshipment Inspection to be conducted and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to be issued by ...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duly certified with embossed seal by the PSI company ...’

이런 보고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예를 들면, 볼리비아, 에콰도르, 앙골라, 니제르, 방글라데시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있다.

- 2) 개발도상국들이 통관을 진행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 M. Finger, “Implementing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Problem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24(9), 2001, September, pp. 1097~1108; J. M. Finger and P. Schuler, “Implementing the Uruguay Round Commitments: The Development Challenge”, *World Economy*, 23(4), 2000, April, pp. 511~525; A. Goorman and L. De Wulf, “Customs 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Valuation Rules”, in Luc De Wulf and Jose B. Sokol eds.,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 World Bank, 2005, pp. 155~181; V. Rege, “Customs Valuation and Customs Reform”,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and Philip English, eds.,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orld Bank, 2002, pp. 128~138.

개발도상국들의 세관을 현대화시키는데 정보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De Wulf and J. B. Sokol, *Customs Modernization Initiatives*, World Bank, 2004, pp. 285~309.

- 3) 외환상의 문제인 이런 자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출국에서 검사를 처음 실시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이었다. 1965년 콩고민주공화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송장 상에 과대하게 기재하거나 계약된 물품 보다 낮은 품질의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된 차액이 자국 수입업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등을 수출국에서 선적에 앞서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수출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Clean Report of Findings를 발행하고 물품의 실사 결과와 송장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이와 유사한 검사 방

는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량 또는 품질 등을 조작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장에 기재하여 달라고 수출업자에게 요청하며 수출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과도한 금액을 기재한 송장을 수입업자에게로 보낸다. 수입업자는 이 송장을 이용하여 부족한 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 배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기재된 송장 금액만큼의 외환을 배정 받아 수출업자에게 송금을 한다. 그리고 나서 수출업자로부터 과도 기재된 송장금액에서 해당 거래의 정확한 실제 송장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전형적인 외화도피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국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은 송장 상에 과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관세포탈을 시도한다.⁴⁾ 예를 들어 수입업자는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량 또는 품질 나아가 품목분류를 조작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장에 기재하여 달라고 수출업자에게 요청하며 수출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과소한 금액을 기재한 송장을 수입업자에게로 보내고 해당 차액은 수입업자로부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수출업자는 이따금 실제로 선적할 수량보다 적게 송장 상에 기입하여 과소한 금액을 기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종종 부패한 세관 공무원과 결탁을 하게 되며 수출업자는 대금을 결제 받는데 다소간의 위험이 있지만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수입금액이 축소되면 수입업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액도 감소하게 되며 해당 국가의 관세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관세평가 상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

법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도입되었다(R. M. Jeker and N. V. Balchin, "The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in Patrick F. J. Macrory, Arthur E. Appleton, and Michael G. Plummer, ed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vol.1, Springer, 2005, p. 574).

- 4) 관세평가 상의 문제인 이런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국에서 관련 검사를 처음 실시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1985년 인도네시아는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세관 통관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관세의 정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검사를 실시하였다(Jeker and Balchin, *op. cit.*, p. 574).
- 5) F. Comfort, "Are PSI Services Useful in Improving Revenue Collection and Promoting Customs Integrity?" in Vinod Rege ed. *Preshipment Inspection: Past Experiences and Future Directions*,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pp. 69~78; B. Lee, "Relationship of Agreement on

일부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외국의 민간기업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위임하여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출국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기관을 ‘Inspection Agency’ 또는 ‘Preshipment Inspection Entity’ 라 하며 이들 기관이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결성된 협회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IFIA) 이다.⁶⁾ 이들 개발도상국은 제3자인 검사기관을 통해 인적 및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한관리와 관세징수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수출업체들은 이런 검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수출업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실제적인 문제는 이런 검사들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창고 사용료를 비롯한 다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⁷⁾ 이밖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제3의 민간기업인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CRF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실제적으로 무효화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적절한 절차상의 권한이 없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검사기관들이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CRF의 발행 권한을 갖게 됨으로서 해당 상품의 가격 및 품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세계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Preshipment Inspection with the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in Vinod Rege ed. *Preshipment Inspection: Past Experiences and Future Direction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p. 53.

개발도상국들이 시도한 세관 현대화에 관한 사례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De Wulf and J. B. Sokol, *Customs Modernization Initiatives*, World Bank, 2004.

- 6) IFIA에 가입한 회원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민간 기업이다. Alex Stewart International, Alfred H Knight International Ltd, Almaty Expertise Ltd, ALS Group, AmSpec Services LLC, Asia Inspection Ltd, Baltic Control Ltd. Aarhus, Bureau Veritas SA, Camin Cargo Control, Cargo Inspections Group, Certispec Group, CIS Commodity Inspection Services, Coastal Gulf & International Inc.(CGI), Control Union International, Control Union, Control Quality Inspecoes Analisese Servicos Ltda, Cotecna Inspection SA, CSA Group, Cugnier Certificadors Ltda, CWM Survey and Inspection BV, DEKRA SE, Engineering Bureau Franke International, E.Q.U.A.Srl, Frey Rearq Ltda, Geo-Chem Group, Helmsman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Co Ltd, “Inspekt RGH”d.o.o., Intertek Group Plc, Maloney Commodity Services Inc, Mitra S.K Private Ltd, National Marine Consultants Inc, Oil Test Internacional Latin America Holding Co,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mpany Ltd, PT Carsurin, PT Superintending Company of Indonesia (SUCOFINDO) Perseo, Ravi Energie Group, Rechlin Russell Marine Group-RRMG, RINA Group, Saybolt International BV, Schutter Rotterdam B.V., Seatrans Consulting Ltd, SGS Societe General de Surveillance SA, SGT Service (Thailand) Co. Ltd, SOEX(ANO “SOYUZEXPERTIZA CCI RF”), Superinspect Group, TUV Rheinland Group, TUV SUD Group, U L Inc, Universal Inspectorate & Services Co. Ltd, V-Trust Inspection Service Co. Ltd.
- 7)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국가에 수출물품을 선적할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선적기간이 3배 소요되며 비용도 2.8% 추가적으로 발생한다(E. Rome,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Future of the GATT/WTO Preshipment Inspection”, *Minn. J. Global Trade*, 7, 1998, p. 483).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이런 검사를 불공정 교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이라 보고 미국 통상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들 수출업체는 CRF를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기관에 기업의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수출업체는 또한 이런 검사가 일부 국가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GATT/WTO의 일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⁸⁾

이에 대해서 검사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연 및 추가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이 생산되어서 선적할 상태가 될 때 가격을 검정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격을 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격을 결정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이 가격을 국가들 간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에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만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런 검사가 처음에는 외환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외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관세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계약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밖에 수출업체들이 제기하는 검사기관의 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⁹⁾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검사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WTO하에서 확립되어 운용되는 제도이며 대금결제 받기 위해서 CRF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 이를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가 특히 WTO 회원국의 수입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Clean Report of Findings(CRF)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¹⁰⁾ 첫째, CRF를 발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절차 시

8) GATT 1994 제VIII조 제1항 (c), 제XI조 제1항, 제XIII조 제1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Rome, *op. cit.*, p. 479 참조).

제VIII조 1항 (c)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들은 또한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 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XI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른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계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XIII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는 모든 제3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으로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 유사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계약 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적용하지 아니 한다.”

9) Rome, *op. cit.*, pp. 480~481.

10) 2014년 6월 현재 WTO 회원국은 160개국으로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현재 가입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의할 사항 및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CRF를 발급받는데 핵심적 사안인 가격검증(price verification)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셋째, CRF를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기관에 제출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넷째, 수출업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CRF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검사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수출업체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II. 검사기관에 의한 Clean Report of Findings의 발급

수출업체가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을 하려 할 때 해당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받은 제3의 기관(민간업체)으로 부터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관세분류 등에 관해 검증받아야 하는 경우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¹¹⁾

여기서 말하는 ‘무차별’이란 의미는 모든 선적물에 대해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품의 종류, 선적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결정할 때 해당 규칙이 일관되고 차별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²⁾ 따라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시험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어떤 품목을 검사에 포함시키느냐 또는 포함시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객관적이라면 일부 품목을 검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¹³⁾ 또한 선적 전 검사활동

11) 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있는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활동이란 사용국(즉, 정부기관 등이 선적전 검사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을 한 회원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물품의 품질, 수량, 환율과 금융조건을 포함한 가격 및/또는 관세분류의 검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무역 매매계약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오원석,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과정의 이해”,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2, pp. 3~21을 참조.

12)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용국은 선적전 검사활동이 무차별적인 방식, 즉 실행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며 이런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국은 그들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된 선적전 검사기관의 모든 검사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3) 예를 들면 대부분의 화물은 선적 전에 공급자의 작업장 구내에서 해당 화물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만 부피가 큰 물품의 경우 선박에 적재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냉동식품의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이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선적 전 검사기관은 검사를 받는 수출업체에게 검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 검사목적상 사용되는 절차 및 기준,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¹⁴⁾

CRF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수입업자가 자국의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선적 전 검사지시서의 발행을 신청하면 수입허가서 또는 외환배분허가서의 일종인 선적 전 검사 지시서를 검사기관에 발송하고 수입업자에게도 통보한다. 수출국에 소재하는 검사기관은 수출업체에게 ‘Request for Detailed Information’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서류는 수출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가격평가와 관련된 정보, 견적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가격표, 운송비용, 제3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 관세분류, 물품의 소재에 관한 정보, 가능한 검사일자 등을 요구한다.

검사일자를 결정할 때 수출업체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지 5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은 긴급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과 수출업체가 검사일자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상호합의에 따라 검사일자를 변경하거나 수출업체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기관은 지정된 검사일자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¹⁵⁾ 검사기관이 수량 및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표준(standard)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의된 표준이 없는 경우 국제표준, 즉 가입이 개방되어 있고 표준화 작업이 자신의 공인된 활동 중의 하나인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¹⁶⁾

14)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용국은 검사기관이 수출업자와의 최초 접촉 시 수출업자에게 검사요건 충족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정보에는 선적전 검사활동과 관련된 사용국의 법률 및 규정, 검사와 가격 및 환율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절차 및 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이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기존 절차의 변경에 관해 검사일이 결정 될 때 수출업자가 통보 받지 않았다면 해당 선적에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GATT 1994 제 XX조의 예외적인 경우와 제 XXI조의 안보상 예외적인 경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출업자에게 통보되기 전이라도 해당 선적에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

15)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15항 참조.

16) 예를 들면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와 같은 기구에 의해 발표된 국제표준을 들 수 있다.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해당 물품이 수출되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exportation)이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설비수출은 물론 생산설비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인 턴키방식 수출처럼 복잡한 특성을 가진 경우 해당 물품이 제조된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manufacture)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턴키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별 장비품목들은 몇 개의 상이한 관세영역에서 제작되어 수출국에서 조립된다.¹⁷⁾ 개별 장비품목들에 대한 검사가 종종 제작업체의 작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물품이 보세창고에 유치되어 있는 경우처럼 해당 물품에 대한 접근이 수출되는 관세영역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제조된 관세 영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수출국의 관세영역에서 해당 물품의 포장을 풀어야 되는 경우 역시 제조된 관세영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¹⁸⁾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담당자는 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가능하면 검사 장소에서 수출업체에게 통보한다.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즉, 만족스러운 검사결과, 조건부로 받아들여진 검사결과, 불만족스러운 검사결과로 나누어지며 각 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결과 보고서가 발행된다. 조건부로 받아들여진 경우 관련 조건, 예를 들면 만족스러운 시험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수량 또는/및 품질 면에서 계약과 상이하여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한 경우 수출업체가 해당 상이성을 해결하든지 수입국으로 부터 이를 수용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기관은 상업송장, 선화증권(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비롯한 관련 최종서류를 수령하고 검사 종결 이후 정상적 영업일자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해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기관은 수출업체에게 그들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출업체가 요청할 경우 가능한 조속히 상호 편리한 날짜에 재검사를

17) 턴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오원석·김용일, “턴키계약체결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5, pp. 145~166; 오원석·이기욱, “턴키방식 플랜트 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2, pp. 3~29을 참조.

18) Jeker and Balchin, *op. cit.*, p. 577.

Full Container Loads (FCL)의 경우 수입국 정부기관이 검사기관에게 화물을 채우는 작업에 임회하여 봉인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화물적재 작업의 준비상황을 알려줄 것을 수출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일이 컨테이너 물품 적재일과 일치하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⁹⁾ 검사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검사기관은 CRF를 발행하거나 CRF의 발행을 확인하는 Security Label이 첨부된 송장을 수출업체에게 보낸다. 상이성이 발견되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우 검사기관은 Discrepancy Report 또는 Non-Negotiable Report of Findings(NNRF)를 발급한다. 수출업체가 대금 결제를 받는데 CRF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은 CRF 또는 Security Label이 첨부된 송장을 수출업체에게 보내야만 한다. 수출업체가 대금결제 목적상 CRF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정보 제공차원에서 수출업체에게 CRF의 사본을 보내거나 CRF의 발행을 통보해 줄 수 있다. 관세평가 목적상 CRF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사기관이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수입국에 소재한 자사의 사무소에 CRF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이를 수입업자와 수입국 세관당국에 배포하게 된다.²⁰⁾

III. 가격검증에 대한 수출업체의 권리보호

1. Brussels Definition of Value(BDV)와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ACV)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결정된다. 관세율은 각국이 양허하여 결정되며 관세스케줄에 이미 고정되어 발표되지만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수입품의 신고가격은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입업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송장 상에 과소 기재하여 가격을 낮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송장 상의 과소 기재를 탐지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수입이 낮아져서 정부수입이 감소하고 해당 수입업자는 공정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GATT의 관세평가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처음 마련된 관세평가의 표준은 1950년 도입된 'Brussels Definition of Value(BDV)'이다. 이 BDV는 특정 시간 및 장소의 공개된 시장 조건하에서 해당 물품이 서로 관련이 없는 매수인 및 매도인 사이에 호가되어 형성된 가격, 즉 정상가격(normal price)이란 관념적인 가격 개념에 기초한다. BDV는 송장가격을 가능한 넓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위탁판매의 경우, 대리인과 양수인에 의한 수입의 경우, 신고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처럼 송장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

19)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16항 참조.

20) WTO document G/L/214.

를 사용하고 거래와 관련된 실제조건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추론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BDV는 반드시 균등하게 적용되지만은 않았으며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자유재량으로, 송장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가격을 인상하곤 하였다. 나아가 많은 국가들이 관세수입을 낮추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가격에 의존하였다. 이처럼 BDV는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평가를 하는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BDV를 선호하는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관세평가는 명확한 개념, 즉 수입품에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거래에 기초한 가격으로 송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럴 경우 자국에 만연해있는 송장상의 과소가격 기제를 방지할 수 없어서 관세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하지만 WTO하에서는 이런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기초하여 관세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일명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ACV)’이 체결되어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²¹⁾ 다만 ACV 이행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이 WTO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해당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²⁾

2. 검사기관에 의한 가격검증

검사기관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과세가격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세목적상의 가격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시하며, 또한 주로 외환배분 및 정부의 정보수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관세목적상의 가격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단순히 기술적 조언을 제시할 뿐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계약가격에 개입하지 않으며 송장가격에 대한 수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시장가격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CRF의 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송장가격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관세목적상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두 가지 표준, 즉 (i) Agreement on Customs

21) Goorman and De Wulf, *op. cit.*, pp. 156~160; Rege, *op. cit.*, pp. 128~132.

22)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79년 4월 12일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본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본 협정의 적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Valuation(ACV)와 (ii) Brussels Definition of Value(BDV)에 기초하여 평가를 한다.

ACV는 해당 수입물품(imported goods)의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 동종·동질 물품(identical goods)의 거래가격 방법(제2방법), 유사물품(similar goods)의 거래가격 방법(제3방법), 공제하는(deductive) 방법(제4방법), 산정가격(computed value) 방법(제5방법), 최종적으로 적용되는(fall-back)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 등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관세평가를 할 경우 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²³⁾ 제1방법인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가산되는 등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⁴⁾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거래가

23)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제1조 ∞ 제6조를 참조.

2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제1조는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일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i) ∞ (iii)에서 정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i)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ii) 해당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에 대한 제한, (iii) 해당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c)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재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d)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 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더라도 이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당 가격은 수용되어야 한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가산된다.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금액은 포함된다. (i) 수수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및 중개료, (ii) 관세목적상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iii)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재료비.

(b)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다음 물품 및 용역을 적절히 배분한 다음의 금액은 포함되어야 한다. (i)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ii)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iii)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재료, (iv)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단, 수입국내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c)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권리사용료(royalty 및 licence fees)는 포함되어야 한다.

(d) 수입이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포함되어야 한다.

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조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하며 가산되어야 하는 조정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또한 신고한 거래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입국 세관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 검사기관은 수입국과 관련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견적서와 가격표 등 기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물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제3방법)의 가장 낮은 가격과 같거나 더 높다면 해당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더 낮은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은 정보가 만족스럽게 설명한다면 신고가격을 수용하고 만족스런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밝힌다. 이처럼 검사결과 보고서에서 검사기관은 관세평가에 대해서, 제1방법에 의한 신고가격을 수락한다는 의견,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그렇지 않으면 제2, 3 방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 제6방법에 기초한다는 의견,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다는 의견 중 하나를 기재하게 된다.

BDV는 관세평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들고 있으며 이는 서로 관련되지 않고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공개된 시장에서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격검증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송장가격을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하기 위해 제시되는 가격과 비교하여 판단을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요소들로 조정을 거쳐야 한다.²⁵⁾ 만일 송장가격이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수 관계에 대해서 제1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b)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상의 동업자인 경우, (c) 고용주와 피고용인인 경우, (d)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을 소유, 통제, 보유하는 자인 경우, (e) 양 당사자중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f) 양당사자가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g) 양당사자가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h) 양당사자가 동일 친족의 구성원인 경우.

- 25) 정상가격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은 수입국의 도착항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도착항에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부수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금, 경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가격이 되기 위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관련되지 않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격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당해 가격을 관세목적상의 가격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송장가격이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관세목적상의 가격을 결정한다.

수출시장가격은 주로 수입국에서 외환을 배분하는데 필요하거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의 검증절차에 따라 검사기관이 의견으로 제시하는 가격이다.²⁶⁾ 검사기관은 판매조건, 수량, 품질, 포장,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한 송장가격과 자신이 검증한 가격인 수출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송장가격이 수출시장가격과 비슷한지 또는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송장가격이 수출시장가격과 상이한 경우 수출업체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제공된 정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검사기관은 **CRF**를 발급하기 위해 송장가격을 수출시장가격 수준으로 맞출 것을 수

첫째, 가격만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격은 매매에 의한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관계 외에 다른 상업적, 금융적, 기타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해당 물품의 재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이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신고가격은 공개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첫째, 매매에 의한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관계 외에 다른 상업적, 금융적, 기타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 둘째,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수입국의 어떤 수입업자에게 판매된 동일물품의 가격보다 무역관례에서 벗어날 정도로 크게 낮은 가격, 셋째, 동일한 수출국의 다른 판매인이 수입국의 어떤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동일물품의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 넷째, 동일한 수출국의 다른 판매인이 수입국의 어떤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 다섯째, 다른 수출국의 판매인이 수입국의 어떤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동일물품 또는 (동일물품이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수출국들 사이의 생산요소 비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가격.

정상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배제시켜 조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정상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정요소로 (i)운임 및 운송료, (ii)수수료(구매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중개료, (iii)수입국 밖에서 발생한 관세 및 조세, (iii)용기(별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제외) 및 포장비용, (iv)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사용료, (v)모든 구매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할인, (vi)소급할인 및 선불금할인, (vi)선불금, (vii)무료물품 및 샘플의 금액, (viii)구매자가 지불한 판매자의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상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조정요소로 (i)현금할인, 수량할인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할인, (ii)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연불지급에 대한 이자, (iii)도착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요금과 같이 입항 후 발생하는 요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수량의 규모, 품질, 상표, 포장, 계절적 요인, 인도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 26) 검사기관은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를 통해 얻은 가격정보, 공표된 시장보고서, 무역협회 보고서, 시장에서 얻은 수출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요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요금, 도착항에 입항한 이후 발생하는 요금 등으로 조정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조정요소로는 인도시기, 인도조건, 고정가격인지 또는 변동가격인지 여부, 상표, 포장조건, 수량, 할인, 신상품 여부, 계절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출입업체에게 요청하게 된다. 특히 송장가격이 수출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장가격이 수출시장가격에 상응하도록 이를 조정할 것을 수출업체에게 요청한다. 외환을 규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CRF상에서 검사기관이 수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수용한 송장가격에 대해서만 외환을 배분한다.

3. 수출업체의 권리

수출업체는 물품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적 가격검증 및 환율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예비적 검증을 통하여, 검사기관과의 가격분쟁이 해결되지 못해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수출업체가 이를 떠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가격에 대한 예비적 검증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계약서, 견적송장, 수입승인 신청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시행한 후 검사기관은 수락을 통보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경우 세부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국의 정부기관은 물품이 수입서류 또는 수입허가서와 일치하는 한 예비적 검증을 통해 수락한 가격을 철회하지 못한다.²⁷⁾

수출업체들은 검사기관이 적절하지 못한 검증방법에 기초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가격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가격검증을 한 경우에만 수출업체 사이의 계약가격을 거부할 수 있다. 첫째, 가격검증을 위한 가격비교는 경쟁적이며 비슷한 판매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국가에서 수출되는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상관행을 따르고, 적용되는 표준할인을 감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요인들을 고려하여 비교가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는 가격들만이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가장 낮은 가격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상이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매매계약조건과 거래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정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조정요소는 상업적 수준 및 판매량, 인도기간과 조건, 가격조정 조항, 품질명세, 특정 디자인, 특정 선적 또는 포장명세, 주문규모, 현물판매, 계절적 영향, 기술도입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료, 관행상 별도의 송장 없이 계약의 일부분으로 제공된 서비스, 수출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출업체들에게 자신들의 가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고 부여하여야 한다. 여섯째, 운임에 대한 검증은 매매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출국내 해당 운송방법의

27)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17항 참조.

합의된 가격에만 적용된다. 여섯째,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해당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출된 물품의 가격, 생산비용, 임의적인 가격 및 허구적인 가격 등이 가격검증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²⁸⁾

IV. 정보제공 및 부당행위에 대한 수출업체의 권리보호

1. 수출업체가 제출한 영업상의 비밀정보 보호

CRF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격검증에 임해야 하는 수출업체들은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신들의 가격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수출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려를 하게 된다. 검사기관은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이미 공표되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또는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한 영업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검사를 위임한 수입국 정부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3자에게도 영업비밀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부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이 수입국 정부기관에게 영업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신용장 또는 다른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정보나 관세, 수입허가, 외환통제 등의 목적상 상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은 수출업체에게 특허를 받은 공정, 면허를 얻은 공정, 특허가 계류 중인 공정과 관련된 생산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나아가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미공개 기술자료, 제조원가를 포함하는 내부가격, 이윤수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수출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의 계약조건 등도 수출업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수출업체는 검사기관이 요구할 수 없는 위의 정보를 특정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다.²⁹⁾

이밖에 검사기관, 즉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

28)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20항 참조.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검사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4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29)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9항 ∞ 제13항을 참조. 특정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전가격과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다.

는 IFIA는 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회원사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원칙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⁰⁾ 여기서도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검사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정보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적절한 보안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가된 직원만이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는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잘게 잘라서 파괴하도록 한다.

2. 검사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수출업체의 대응방안

검사기관의 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먼저 검사기관의 관련자와 접촉하여 불만을 설명하며, 이런 불만사항을 접수한 검사기관의 관리자는 해당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응답할 것이 요구된다. 이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출업체는 이의절차를 밟게 되는데 절차에 관한 정보는 검사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사기관은 이의를 접수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검사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각 도시 또는 항구에서 정상 근무시간에 만날 수 있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무원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³¹⁾ 수출업체는 이의절차를 밟기 위해서 Preshipment Inspection Internal Appeal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사무원은 수출업체의 불만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접수된 후 가능한 조속히, 보통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통보를 하게 된다.

수출업체와 검사기관사이의 분쟁이 불만을 제기하는 쌍무적인 방법이나 내부적인 이의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독립적 재심기구가 마련되어 있다.³²⁾ 수출업체와 검사기관간의 분쟁은 상호간에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지

30) 이 준수원칙은 진실성, 이해의 상충, 비밀유지, 뇌물방지, 공정한 마케팅과 관련된 행동 및 윤리 강령 등에 관한 것이다. 즉, 회원사들은 검사를 시행하는데 전문적이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여 실제 검사결과와 전문적인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검사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기관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뇌물도 공여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만하거나 오도하지 않는 진실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IA는 이런 준수원칙을 지키기 위한 12가지의 시행강령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도 영업비밀정보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31)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2조 제21항 참조.

32) 독립적 재심기구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WTO document G/PSI/W/1 참조.

만, 내부적인 이의를 제기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경과하면 수출업체는 해당 분쟁을 독립적 재심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재심기구는 수출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 즉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즉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IFIA)가 공동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며 WTO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of Trade in Goods)의 보조기관으로 적어도 1년에 한번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독립적 재심절차는 두개의 민간기업인 수출업체와 검사기관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WTO하에서 Dispute Settlement Body(DSB)를 통해 진행되는 분쟁해결 절차와는 구별이 된다. 이런 재심은 이의절차에 따라 내부적인 이의를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며 재심절차를 밟기 위해서 수출업체는 Standard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여 독립적 재심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Standard Response Form을 재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적 재심기구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세계 부문의 전문가 목록, 즉 ICC가 지명한 전문가들의 목록, IFIA가 지명한 전문가들의 목록, 독립적 재심기구가 지명한 독립적인 무역전문가들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³³⁾ 독립적 재심절차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수행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경우 선정된 1명의 독립적인 무역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수출업체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독립적 재심기구와 접촉하여 패널의 구성을 요청하면 재심기구는 수출업체가 ICC가 지명한 전문가 목록에서 선택한 3명 중 1명을 선정하고 또한 검사기관이 IFIA가 지명한 전문가 목록에서 선택한 3명 중 1명을 선정한다.³⁴⁾ 이 선정된 전문가들은 해당 당사자, 즉 수출업체 및 검사기관을 옹호하거나 대리해서는 아니 되고 독립적인 심판자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기구는 자신이 작성한 목록에서 1명을 선정하여 총 3명의 전문가로 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재심기구가 선정한 독립적인 무역전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패널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패널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선정된 패널리스트들의 소집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에서 회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절차는 신속하여야 하며 수출업체와 검사기관은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표명할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재심을 하는 목적은 분쟁 당사자, 즉 수출업체와 검사기관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검사과정에서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의 규정을 준수하였

33) 전문가 목록에 대한 예는 WTO document G/PSI/IE/1 참조.

34) 독립적 재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패널리스트에 대한 보상비, 통신비 등에 충당될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재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재심에 따른 비용에 관해서는 WTO document G/PSI/W/1 참조.

는지 여부를 확증하는데 있다.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된 패널의 판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며 이런 판정은 재심 요청이 있을 후 당사자들 사이에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영업일자 기준으로 8일 이내에 결정되어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판정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패널이 내린 결정은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수출업체와 검사기관을 구속한다.³⁵⁾

이밖에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선적전 검사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재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⁶⁾

V. 결 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시행하는데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종종 수출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간기업인 제3의 기관에게 선적 전 검사를 위임하고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해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발급되는 CRF를 이용하여 해당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국가재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외화도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수출업체들은 이런 검사로 인해 입게 될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이 논문은 수출업체가 검사기관으로부터 CRF를 발급받기 위해 밟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CRF가 발급되는 과정과 이런 과정 중 보호받아야 할 수출업체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CRF를 발급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격검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ACV 및 BDV에 기초한 가격검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협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출업체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CRF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검사기관에 제출한 영업비밀정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넷째, CRF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검사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수출

35) 독립적 재심기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출업체가 검사기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킬 경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다른 규정들로 인해 수출업체와 검사기관 사이의 분쟁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본다(WTO document G/L/300 참조).

36) 대외무역법 제4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6조, 제85조 참조.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협정상의 조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수출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 전에 수입국 정부기관의 위임을 받아 제3의 검사기관이 시행하는 선적 전 검사는 정확한 일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해당 개발도상국들의 인적 및 물적 능력이 확립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검사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및 논의는 계속 필요하며 CRF와 관련된 사례 및 실증적인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오원석,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과정의 이해”,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오원석·김용일, “턴키계약체결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오원석·이기욱, “턴키방식 플랜트 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Comfort, F., “Are PSI Services Useful in Improving Revenue Collection and Promoting Customs Integrity?” in Vinod Rege ed. *Preshipment Inspection: Past Experiences and Future Direction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 Dequiet, V., Geourjon, A. M. and Rota-Graziosi, G., “Mutual Supervision in Preshipment Inspection Program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99, 2012.
- De Wulf, L. and McLinden, G.,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ustoms Modernization”, in Luc De Wulf and Jose B. Sokol eds.,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 World Bank, 2005.
- De Wulf, L. and Sokol, J. B., *Customs Modernization Initiatives*. The World Bank, 2004.
- Finger, J. M., “Implementing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Problem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vol.24, 2001, September.
- Finger, J. M. and Schuler, P., “Implementing the Uruguay Round Commitments: The Development Challenge”, *World Economy*, vol.23, 2000, April.
- Goorman, A. and De Wulf, L., “Customs 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Valuation Rules”, in Luc De Wulf and Jose B. Sokol eds.,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 World Bank, 2005.
- Jeker, R. M. and Balchin, N. V., “The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in Patrick F. J. Macrory, Arthur E. Appleton, and Michael G. Plummer, ed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vol.1*, Springer, 2005.
- Lee, B., “Relationship of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with the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in Vinod Rege ed. *Preshipment Inspection: Past*

Experiences and Future Direction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Rege, V., "Customs Valuation and Customs Reform",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and Philip English, eds.,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orld Bank, 2002.

Rome, E.,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Future of the GATT/WTO Preshipment Inspection", *Minn. J. Global Trade*, vol.7, 1998.

ABSTRACT

Issuance of Clean Report of Findings and Rights of Exporters

Byung-Lak LEE

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customs procedures. For example, they have experienced heavy administrative constraints such as lack of qualified personnel and non-computerization. Some importer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tried to undervalue or overvalue the imported goods and misclassify them with the target of lowering the incidence of customs dut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many of developing countries often require the exporter to get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ssued by a pre-shipment inspection entity. This study tries to reply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which the exporters are faced in the process of issuance of CRF. First, what are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the exporters have to note in the event a CRF is issued by the inspection entity? Second, how do the exporters safeguard their own rights in case of price verification? Third, how to protect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submitted by the exporters in order to get a CRF? Fourth, how can the exporters respond to the improper conducts that the inspection entities have done?

Keywords :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IFIA), Transaction Value, Normal Price.